

조례안예고

창원시의회 공고 제2026 - 27호

창원시 조례영향분석 조례안

「창원시 조례영향분석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및 「창원시의회 회의 규칙」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6년 4월 10일

창원시 의회의장

1. 자치법규명

창원시 조례영향분석 조례안

2. 제정이유

조례의 제정·개정 및 시행 이후 실효성, 적합성 등을 사전·사후에 분석하는 조례영향분석 제도를 도입하여 합리적인 입법 및 시민 권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조레영향분석의 목적과 정의를 정함.(안 제1조~제2조)

나. 조레영향분석에 관하여 의장과 시장의 책무를 정함.(안 제3조)

다. 사전·사후조레영향분석의 대상과 실시 주체, 기준을 정함.

(안 제4조~제6조)

라. 창원시의회 조레영향분석위원회의 설치·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.(안 제7조~제15조)

마. 조레영향분석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 및 결과의 활용·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함.(안 제16조~제17조)

4. 의견제출

가.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시의회의장(참조: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팀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의견제출 사항

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(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의견 제출할 곳: 우)51435 /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

창원시의회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팀(전화:055-225-5373, FAX:055-225-4743)

라. 의견제출 방법: 우편, 팩스, 이메일(cost403@korea.kr), 직접 방문 등

창원시 조례영향분석 조례안

(구점득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66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4. 10.

발 의 의 원 : 구점득 · 강창석 · 권성현 · 김경수 · 박해정
백승규 · 이해련 · 정순욱 · 최정훈 의원(9명)

1. 제안이유

조례의 제정·개정 및 시행 이후 실효성, 적합성 등을 사전·사후에 분석하는 조례영향분석 제도를 도입하여 합리적인 입법 및 시민 권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영향분석의 목적과 정의를 정함.(안 제1조~제2조)
- 나. 조례영향분석에 관하여 의장과 시장의 책무를 정함.(안 제3조)
- 다. 사전·사후조례영향분석의 대상과 실시 주체, 기준을 정함.
(안 제4조~제6조)
- 라. 창원시의회 조례영향분석위원회의 설치·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.(안 제7조~제15조)
- 마. 조례영향분석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 및 결과의 활용·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함.(안 제16조~제17조)

3. 참고사항

관계 법령

창원시 조례영향분석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창원시 조례영향분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창원시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조례영향분석”이란 창원시 조례의 입안 또는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·행정적·재정적 및 사회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(의장 등의 책무) ① 창원시의회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은 조례영향분석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조례의 입법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.

② 창원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조례영향분석을 통하여 제기된 문제를 개선하고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.

제4조(조례영향분석 대상) ① 조례 제정·개정 전에 실시하는 조례영향분석(이하 “사전조례영향분석”이라 한다)의 대상은 창원시가 제정·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한다. 다만,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은 제외할 수 있다.

② 조례 제정·개정 후에 실시하는 조례영향분석(이하 “사후조례영향분석”이라 한다)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시행 후 2년이 지난 조례
2. 사후조례영향분석을 실시한 날부터 4년이 지난 조례

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례영향분석 제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기관설치·인사운영·업무분담·문서관리 등 단순하거나 기술적(記述的)인 내용의 조례안 또는 조례
2.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창원시의회 조례영향분석위원회가 조례영향분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조례안 또는 조례

제5조(사전조례영향분석) ① 의장은 사전조례영향분석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, 의사입법담당관이 이를 보좌한다.

② 의장은 별표 1을 기준으로 해당 조례안에 대한 사전조례영향분석을 실시하고, 「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」에 따른 해당 조례안의 소관 상임위원회(이하 “상임위원회”라 한다)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.

제6조(사후조례영향분석) ① 사후조례영향분석은 제7조에 따른 창원시의회 조례영향분석위원회가 별표 2를 기준으로 실시한다.

② 사후조례영향분석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.

③ 창원시의회 조례영향분석위원회는 사후조례영향분석 결과보고서를 작

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, 의장은 그 결과를 상임위원회와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.

제7조(창원시의회 조례영향분석위원회의 설치) 의장은 조례영향분석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창원시의회 조례영향분석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8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한다.

1. 사전조례영향분석 기준에 관한 사항
2. 사후조례영향분석 대상 선정 및 실시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조례영향분석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제9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.

1. 창원시의회 의원
2. 창원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
3. 변호사, 교수 등 법률전문가
4. 그 밖에 조례영향분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제10조(위원의 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위원의 사임 등으

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11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2조(위원회의 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3조(간사)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조례영향분석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.

제14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15조(위원회 운영지원 등) ① 의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 또는 자문에 응한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효율적인 사후조례영향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.

제16조(자료 제출) ① 의장은 조례영향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기한,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7조(결과의 활용 및 공개) ① 상임위원회는 조례영향분석 결과를 의정 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하며, 시장 및 관계 기관에 적절한 조치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.

② 의장은 조례영향분석 결과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. 다만, 공개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사전조례영향분석의 대상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의장에게 제출된 조례안부터 적용한다.

사전조례영향분석 기준(제5조제2항)

분석 항목	세부항목	분석 기준
1. 입법의 필요성	1-1.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이거나 창원시 자치사무에 해당하는가?	① 해당한다 ② 해당하지 않는다
	1-2. 창원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또는 연간 주요업무계획과 연계된 사항인가?	① 연계된다 ② 부분적으로 연계된다 ③ 연계되지 않는다
	1-3. 조례로 규정해야 할 사항인가? (규칙으로 정하거나 국가 법령으로 정해야 할 사항은 아닌가?)	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
	1-4. 비입법적 수단(행정지도, 예산지원 등 정책 시행)으로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가?	① 불가능하다 ② 부분적으로 가능하다 ③ 가능하다
	1-5. 타 지자체에서 유사 조례를 이미 제정·시행하고 있는가? (입법 필요성의 간접 근거)	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
2. 적법성/중복성	2-1. 입안 내용이 헌법 및 상위 법령에 부합하는가?	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
	2-2.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중 유사 조례와 관련된 저촉 해석례가 없는가?	① 저촉 해석례가 없다 ② 저촉 해석례가 있다
	2-3. 입법예고 중인 상위법령 제정안·개정안과 충돌하지 않는가?	① 충돌하지 않는다 ② 충돌한다
	2-4. 창원시 기존 조례·규칙 중 동일·유사 사항을 규율하는 자치법규가 없는가?	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
	2-5. 중복되는 자치법규가 있는 경우, 기존 조례 개정으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가?	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③ 해당사항 없음
	2-6. 법령 재기재로 법령 불부합의 위험은 없는가?	① 있다 ② 없다
3. 조문의 명확성/체계성	3-1. 핵심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가?	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③ 해당사항 없음
	3-2. 조문의 표현이 명확하고 중의적·다의적 표현이 없는가?	① 그렇다 ② 부분적으로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
	3-3. 조·항·호·목의 구성이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적합한가?	① 적합하다 ② 일부 적합하다 ③ 적합하지 않다

분석항목	세부항목	분석 기준
4.비용/ 재정 영향	4-1. 비용추계서 또는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가 작성되었으며, 비용추계서 작성 시 연간 소요 예산 규모 및 자원 조달 방안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가?	① 그렇다 ② 부분적으로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
	4-2. 국·도·시비 등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, 해당 예산의 법적 근거 및 지속 가능성이 확인되었는가?	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③ 해당사항 없음
	4-3. 조례 집행을 위한 추가 인력 또는 조직 신설이 필요한 경우, 예산 반영 계획이 있는가?	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③ 해당사항 없음
5.공정성	5-1. 특정 집단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적 요소가 없는가? (평등원칙 위반 여부)	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
	5-2. 타 지자체에서 유사 조례 시행 시 주민 갈등·분쟁·소송 사례가 있는가?	① 사례가 없다 ② 일부 사례가 있다 ③ 다수 사례가 있다
	5-3. 취약계층(저소득층, 장애인, 노인 등)에 대한 배려 조항이 반영되어 있는가?(해당 조례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)	① 그렇다 ② 부분적으로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해당사항 없음
	5-4. 개인정보 수집·처리 조항이 있는 경우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상 수집·처리 근거가 명시되어 있는가?	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③ 해당 없음

사후조례영향분석 기준(제6조제1항)

분석항목	세부항목	분석 기준	의견 및 자료
1. 입법근거 및 적법성	1-1. 이 조례는 위임조례인가,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인가?	<input type="checkbox"/> 위임조례 <input type="checkbox"/> 자치사무 조례	
	1-2. 조례에서 규정한 위임 근거가 올바른가?	<input type="checkbox"/> 그렇다 <input type="checkbox"/> 그렇지 않다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사항 없음	
	1-3. 조례가 위임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제정·개정되었는가?	<input type="checkbox"/> 그렇다 <input type="checkbox"/> 그렇지 않다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사항 없음	
	1-4.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제한·의무부과·벌칙 부과·규제 사항에 대한 법률 위임이 있는가?	<input type="checkbox"/> 그렇다 <input type="checkbox"/> 그렇지 않다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사항 없음	
	1-5. 관련 법령 개정 등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가? (법령 재기재 사항 포함)	<input type="checkbox"/> 그렇다 <input type="checkbox"/> 그렇지 않다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사항 없음	
	1-6. 조례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?	<input type="checkbox"/> 그렇다 <input type="checkbox"/> 그렇지 않다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사항 없음	
2. 실효성	2-1. 이 조례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조례가 제정·시행되고 있어 통합이 필요한가?	<input type="checkbox"/> 그렇다 <input type="checkbox"/> 그렇지 않다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사항 없음	
	2-2. 조례에 따른 계획 수립·시행이 이루어지고 있는가?	<input type="checkbox"/> 그렇다 <input type="checkbox"/> 그렇지 않다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사항 없음	
	2-3.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고 적절하게 집행되고 있는가?	<input type="checkbox"/> 그렇다 <input type="checkbox"/> 그렇지 않다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사항 없음	
	2-4.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 사업을 집행기관이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가?	<input type="checkbox"/> 그렇다 <input type="checkbox"/> 그렇지 않다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사항 없음	
	2-5. 조례의 내용이 창원시의 현실·여건과 부합하는가?	<input type="checkbox"/> 그렇다 <input type="checkbox"/> 그렇지 않다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사항 없음	

분석항목	세부항목	분석 기준	의견 및 자료
3. 공평성	3-1. 조례에서 장애인·성별 등 특정 계층이나 특정 지역을 차별하는 조항이 있는가?	<input type="checkbox"/> 그렇다 <input type="checkbox"/> 그렇지 않다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사항 없음	
	3-2. 조례에서 정한 차별이 합리적인가? (정책 목적상 불가피한 차등인가?)	<input type="checkbox"/> 그렇다 <input type="checkbox"/> 그렇지 않다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사항 없음	
4. 주민의견 수용성	4-1. 조례 제정·개정 시 입법예고를 하였는가?	<input type="checkbox"/> 그렇다 <input type="checkbox"/> 그렇지 않다	
	4-2. 조례 제정·개정 시 공청회, 세미나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주민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는가?	<input type="checkbox"/> 그렇다 <input type="checkbox"/> 그렇지 않다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사항 없음	
	4-3. 조례와 관련한 민원(청원, 진정, 소송 등)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는가?	<input type="checkbox"/> 그렇다 <input type="checkbox"/> 그렇지 않다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사항 없음	
	4-4. 조례의 체계나 사용되어진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는가?	<input type="checkbox"/> 그렇다 <input type="checkbox"/> 그렇지 않다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사항 없음	
5. 지원의 적정성	5-1.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?	<input type="checkbox"/> 그렇다 <input type="checkbox"/> 그렇지 않다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사항 없음	
	5-2.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지원 규모가 적정한가?	<input type="checkbox"/> 그렇다 <input type="checkbox"/> 그렇지 않다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사항 없음	
	5-3. 지원대상이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가?	<input type="checkbox"/> 그렇다 <input type="checkbox"/> 그렇지 않다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사항 없음	
	5-4.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?	<input type="checkbox"/> 그렇다 <input type="checkbox"/> 그렇지 않다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사항 없음	
	5-5. 행정기관의 행정재량 범위가 조례에서 적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?	<input type="checkbox"/> 그렇다 <input type="checkbox"/> 그렇지 않다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사항 없음	

분석항목	세부항목	분석 기준	의견 및 자료
6.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(해당 조례의 위원회 구성 규정이 없는 경우 전체 ‘해당사항 없음’으로 처리)	6-1. 조례에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는가?	<input type="checkbox"/> 그렇다 <input type="checkbox"/> 그렇지 않다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사항 없음	
	6-2. 해당 위원회는 법정위원회인가, 조례로 설치하는 위원회인가?	<input type="checkbox"/> 법정위원회 <input type="checkbox"/> 조례상 위원회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사항 없음	
	6-3. 위원회 위원의 성별 구성이 적정하게 유지되고 있는가?	<input type="checkbox"/> 그렇다 <input type="checkbox"/> 그렇지 않다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사항 없음	
	6-4. 위원회가 법령·조례에서 정한 회의 개최 실적이 있고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?	<input type="checkbox"/> 그렇다 <input type="checkbox"/> 그렇지 않다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사항 없음	
	6-5. 해당 위원회를 계속 설치·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?	<input type="checkbox"/> 그렇다 <input type="checkbox"/> 그렇지 않다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사항 없음	
	6-6.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?	<input type="checkbox"/> 그렇다 <input type="checkbox"/> 그렇지 않다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사항 없음	
7. 종합의견	7-1. 이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?	<input type="checkbox"/> 그렇다 <input type="checkbox"/> 그렇지 않다	
	7-2.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는가? (해당사항 모두 표기)	<input type="checkbox"/> 위임근거 불부합 <input type="checkbox"/> 위임근거 불명확 <input type="checkbox"/> 법령 위임 없는 규제 정비 필요 <input type="checkbox"/> 다른 조례와 상충·모순 <input type="checkbox"/> 조례 시행의 문제점 발생 <input type="checkbox"/> 조례의 공정성 문제 <input type="checkbox"/>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정비 필요 <input type="checkbox"/> 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 필요 <input type="checkbox"/> 그 밖의 사유	

분석항목	세부항목	분석 기준	의견 및 자료
	7-3. 이 조례를 폐지할 사유가 있는가? (해당사항 모두 표기)	<input type="checkbox"/> 유사 조례와의 통합 운영 필요 <input type="checkbox"/> 조례 시행 불가능 <input type="checkbox"/> 최근 3년간 운영 실적 전무 <input type="checkbox"/> 조례 존속 기한 경과 및 조례 목적 달성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	
	7-4. 그 밖에 이 조례와 관련된 의견이 있는가?	<input type="checkbox"/> 있다(우측 의견란에 자유롭게 기술) <input type="checkbox"/> 없다	

■ 지방자치법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지방자치단체의 구역, 조직, 행정관리 등

가.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·위치 및 구역의 조정

나. 조례·규칙의 제정·개정·폐지 및 그 운영·관리

다. 산하(傘下) 행정기관의 조직관리

라.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·감독

마. 소속 공무원의 인사·후생복지 및 교육

바.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

사. 예산의 편성·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

아. 행정장비관리,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

자. 공유재산(公有財産) 관리

차. 주민등록 관리

카.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

2. ~ 7. (생략)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

제130조(자문기관의 설치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(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,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, 위원회 등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

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·절차,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·절차,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·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·운영해서는 아니 되며,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■ 지방자치법 시행령

제78조(자문기관의 설치요건)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.

1.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
2.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

■ 행정기본법

제39조(행정법제의 개선) ① 정부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되어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개선하여야 한다.

② 정부는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 및 일관된 법 적용 기준 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협의 및 관계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선조치를 할 수 있으며, 이를 위하여 현행 법령에 관한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.

■ 행정기본법 시행령

제17조(입법영향분석의 실시) ① 법제처장은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현행 법령을 대상으로 입법의 효과성, 입법이 미치는 각종 영향 등에 관한 체계적인 분석(이하 “입법영향분석”이라 한다)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입법영향분석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법령의 규범적 적정성과 실효성 분석
2. 법령의 효과성 및 효율성 분석
3. 그 밖에 법령이 미치는 각종 영향에 관한 분석

③ 법제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대상으로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할 현행 법령에 대한 수요를 조사할 수 있다.

④ 법제처장은 입법영향분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⑤ 법제처장은 입법영향분석 결과 해당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법령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입법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⑥ 법제처장은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별표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입법영향분석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,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·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
⑦ 법제처장은 제6항에 따른 조사·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에 그 조사·연구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■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

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.

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.

1. 의회운영위원회

- 가.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
- 나. 의회관련 자치법규에 관한 사항
- 2. 기획행정위원회
 - 가. 대외정책관, 인구정책담당관, 청년정책담당관, 시민소통담당관, 공보관, 감사관, 기획조정실, 자치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
 - 나. 소방본부, 소방서,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
 - 다. 구청의 행정과, 세무과, 민원지적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
- 3. 산업경제복지위원회
 - 가. 미래전략산업국, 경제일자리국, 복지여성보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
 - 나.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
 - 다. 구청의 사회복지과, 가정복지과, 경제교통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
- 4. 문화환경도시위원회
 - 가. 도시정책국, 문화관광체육국, 기후환경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
 - 나. 푸른도시사업소, 상수도사업소, 하수도사업소, 도서관사업소,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
 - 다. 구청의 환경과, 문화위생과, 건축허가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
- 5. 건설해양농림위원회
 - 가. 안전총괄담당관, 재난대응담당관, 교통건설국, 해양항만수산국, 도시공공개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
 - 나.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
 - 다. 구청의 안전건설과, 산림농정과, 수산산림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

■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제13조(수당) ① 시장은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.

1. 시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
2. 창원시의회의 의원이 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

②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, 수당의 지급기준은 「지

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에 따른다.

1. 참석수당: 위원회에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·의결·자문 등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
2. 심사수당: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전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
- ③ 위원이 원거리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른 참석수당 지급 시 교통비, 식비(급량비 기준단가 적용), 숙박비를 실비의 범위에서 별도 지급할 수 있다.
- ④ 시 소속 공무원과 창원시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출장할 때에는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⑤ 제10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관련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에 상당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■ 창원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

제4조의2(의사입법담당관) 의사입법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.

1.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·운영에 관한 종합 조정
2.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
3. 각종 회의록 작성, 보관,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
4. 각종 의안 접수, 인쇄, 배부, 이송 등 처리 종합
5.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
6. 청원·진정서의 접수, 분류 및 처리
7. 의결문서의 보존, 발간, 이송 등 처리 총괄
8. 의회 소관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의 총괄 관리
9. 조례 등의 제정·개정과 관련한 법제 총괄
10. 예산·결산 분석에 관한 사항
11. 의회 관련 쟁송업무 처리 및 입법·법률고문 운영
12. 의원연구단체 관리 및 연구활동 지원
13. 그 밖에 의사운영 및 입법지원에 필요한 사항